

의안번호	2218133
의 퇴 인	김위상의원
회 답 일	2026. 5. 21.
추계번호	26B194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가 택시의 운임·요금 및 효율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택시운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억 5,000만원(연평균 9,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공청회 개최 (안 제8조의2)	45	45	45	45	45	226	45
택시운임관리위원회 의 설치·운영 (안 제8조의3)	45	45	45	45	45	224	45
합 계	90	90	90	90	90	450	90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공청회 개최 횟수 및 비용,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의2(택시 운임·요금의 기준과 효율의 결정 등) 신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하여 택시의 운임·요금과 효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8조의3(택시운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신설	택시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택시의 운임이나 요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택시운임관리위원회를 둔다.(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제3항) 1. 교통·경제 분야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조의2(택시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 등) 신설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8조의3(택시운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신설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택시의 운임·요금 및 효율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안 제8조의2제2항)
 -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매년 1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하여 택시의 운임·요금과 효율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임
 - 시·도별 공청회 개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서울시의 공청회 개최 예산의 회당 개최 단가)를 참고하여 추계함
 - － 공청회 개최 횟수는 시·도별로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유사사례) 서울특별시는 매년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예산을 총 1억 9,000만원(67회 개최 × 회당 단가 283만원) 편성하였음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가 택시의 운임·요금 및 효율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청회를 매년 1회 개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억 2,600만원(연평균 4,500만원)으로 추계됨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2026.7.1. 시행예정)를 반영하여 16개 시·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공청회 개최에 따른 비용추계: 2027~2031년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개최 시·도 수(A, 개)	16	16	16	16	16	—	—
공청회 개최 횟수(B, 회)	1	1	1	1	1	—	—
공청회 개최 비용(C, 만원/회)	283	283	283	283	283	—	—
합 계(D=A×B×C, 백만원)	45	45	45	45	45	226	45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공청회 개최 횟수 및 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택시운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8조의3)

- 개정안은 택시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택시의 운임이나 요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택시운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임
- 시·도별 택시운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
- (유사사례)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1)에 따라 택시 관련 정책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택시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음

[표 3] (유사사례)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위원 구성	회의 개최 횟수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위원회	총 21명 - 위촉직(민간전문가) 위원: 20명 - 당연직(지자체공무원) 위원: 1명	연평균 약 1회 *최근 5년간 연평균 개최 횟수

자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내용 참조

- (민간위원 수) 개정안에 따른 택시운임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개정안의 내용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시·도별 각 14명으로 가정함

[표 4] 시·도별 택시운임관리위원회 구성(안)

(단위: 명)

구분	인원수	위원 신분
민간위원	14	민간전문가
당연직위원	1	지자체 소속 공무원
합 계	15	

1)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제14조(택시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 (회의개최 횟수) 회의개최 횟수는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민간위원 회의참석 사례금)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²⁾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시·도에 택시운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억 2,400만원(연평균 4,500만원)으로 추계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2026.7.1. 시행예정)를 반영하여 16개 시·도에서 택시운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표 5] 시·도별 택시운임관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추계: 2027~2031년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설치 시·도 수(A, 개)	16	16	16	16	16	—	—
민간위원 수(B, 명)	14	14	14	14	14	—	—
회의개최 횟수(C, 회)	1	1	1	1	1	—	—
회의참석 사례금(D, 만원/명·회)	20	20	20	20	20	—	—
합 계(E=A×B×C×D, 백만원)	45	45	45	45	45	224	45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000원내에서 집행(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6. 1. p.150.)

IV. 부대의견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공청회 개최 횟수 및 비용,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